

중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안전관리대행제도 개선방안

김동하 · 김주홍 · 임현교*

충북대학교 대학원 · *충북대학교 안전공학과

1. 서론

안전관리대행기관은 지정조건이 비영리법인으로 제한되었던 1996년에 38개소에 불과하였으나, 1996년 이후 영리법인으로 확대되면서 2003년 2월말현재 68개소로 6년만에 30개소가 증가하고 대행요원도 524명에 달하고 있다(표 1).

표 1 안전관리대행기관 현황

구분	기관명	대행요원	총지정 한계		대행현황	
			사업장수	근로자수	사업장수	근로자수
비영리법인	안전협회(21개소)	229	6,600	440,000	5,717	366,745
	기술협회(17개소)	121	3,600	240,000	3,094	174,205
영리법인	민간대행기관(29개소)	174	5,190	346,000	3,144	200,656
계	67개소	524	15,390	1,026,000	11,955	741,606

그리고, 노동부가 2002년 11월 5일부터 12월 6일까지 행한 대행기관 실태조사점검결과에 따르면, '02.9월말현재 대행사업장은 2001년 12월말 대비 168개소 증가(1.5%)한 11,408개소이고 업종별로는 제조업 9,361개소(82.1%), 창고통신업 284개소(2.5%), 전기 가스수도업 151개소(1.3%), 기타사업이 1,509개소(13.3%)였다. 규모별로는 50인 이상 7,129개소(62.5%), 30~50인미만 3,187개소(27.9%)이나 30인미만 사업장도 1,092개소(9.6%)였다.

그러나, 1997년 이후 근로자 1인당 월 2,610원으로 상한 고시되어 있는 대행수수료가 지금까지 동결되고,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의 신규지정 제한 근거도 불명확하고, 대행요원 1인당 담당 사업장수가 30개소로 60개 사업장을 방문(격주 1회 방문)해야 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대행사업장 안전관리의 핵심인 대행요원과 사업장 안전담당자를 대상으로 안전관리대행제도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현실태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2. 법제도 및 대행업무

안전관리대행제도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관리자등)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관리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고하는 조항에서 출발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제5항에서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06842호) 제40조 (안전관리등의 외부위탁) 제1항에서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법률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두어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사업주가 원하면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한편, 대행기관은 표 2와 같이 대행업무시 일반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상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표 2 대행업무의 종류

구 분	실 시	주 기
일반안전점검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장은 대행요원 2인을 1조로 실시	-월2회(격주단위)
정밀안전점검	-점검요원 2인 이상으로 실시(단, 200인 이상 사업장은 3인 이상 으로 한다)	-신규계약사업장 : 대행계약후 1개월 이내 -중대재해발생사업장 : 중대재해 발생일로 부터 1개월 이내 -기존사업장중 연도말기준 개해율이 전년 도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은 익년도 1/4분기 이내에 1회 실시

3. 설문조사 및 결과

3.1 설문지 작성·배포·회수

설문지는 조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를 참고로 하여 대행요원용과 사업장 안전담당자용의 2가지로 나누어 작성하였다. 각 설문지에는 실태 및 문제점 도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문항이 각각 22, 25개 포함되었다.

2002년 6월 이전 지정된 안전관리대행기관 66개소에 대하여 업종별 대상사업장의 10%이상을 임의 선정하여 대행요원용 설문 600부와 사업장 안전담당자용 설문지 1100부를 배포하고 각각 517부와 888부를 회수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3.2 설문대상 분석결과

대행요원의 고용형태는 84.7%가 정규직, 15.3%가 기타 계약직이었다. 경력은 평균

10.9년이고 현재의 대행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평균기간은 5.2년이었다.

그리고, 대행사업장에는 85.1%의 정규직, 13.3%의 비정규직, 1.6%의 외국인이 근무하고 있었다. 안전담당자는 전임자의 경우 8.8년, 겸임자의 경우 7.8년의 안전업무경력자였다. 안전담당자의 전임여부는 1개소당 0.2명으로 대부분 다른 업무와 겸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행요원 설문결과

대행요원의 82.9%가 대행업무에 보통이상의 만족을 표시하고 있었으며, 대행기관의 노사간의 신뢰도면에서는 66.2%가 만족하고 있었다.

한편, 사업장 대행관리면에서는 사업장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사용하고 한다고 한 비율이 77.8%로 적극적인 대행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부합여부에 대하여는 52.8%만이 부합한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대행수수료에 대하여는 75.1%가 낮다고 응답한 반면, 19.3%는 적정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현행대행 및 출장지도 횟수에 대하여는 60~71%이상이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사업장 안전담당자 설문결과

사업장 안전담당자는 업무에 대하여 72.6%가 만족하고 있으며, 사업주 및 근로자는 안전의식 수준 또한 90%정도가 보통이상 높은편이라고 답하는 등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안전관리지식과 정보의 습득원으로서 78.3%가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도 및 교육에 의하는 것으로 나타나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역할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산재예방효과 및 기여도면에서 대행기관의 서비스 내용에 대하여는 대부분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었다. 세부적으로는 위탁이유에 대해 안전관리대행기관의 기술지원의 효율성 때문이 81.6%를 차지하였고, 대행서비스에 대해서는 91.3%가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안전관리자 의무고용, 안전관리업무 위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최고 인원 등 규제완화 4건에 대하여는 과반수 이상이 규제복원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안전관리자 직무향상교육은 79.4%가 필요 내지 복원을 희망하였다.

산업재해 취약요인으로 비정규직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안전의식 결여(55.8%) 및 숙련도 부족(38.5%)을 꼽았으며, 외국인근로자에 대하여는 언어소통 애로(52.8%), 숙련도 부족(29.4%)을 주된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3.5 규제복원 의견비교

표 3 은 대행요원과 사업장 안전담당자의 규제완화에 대한 조사결과의 비교표이다. 규제복원에 대해서 대행요원이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에 92.1%가 찬성하는 것을 제

외하고는 대부분 규제복원을 별로 바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규제복원에 대한 의견비교

항 목	결 과(%)	
	대행요원	사업장 안전담당자
①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찬성 92.1%	찬성 43.4%
- 확대시 대상사업장 기준	위험업종중심 40.6%, 모든사업장 40.4%	위험업종중심 39.6%, 모든사업장 24.7%
- 50인미만 확대시 업종	금속, 기계, 화학, 식료, 수송용기계기구, 기타제조	30인 40.8%, 40인 20.9%
② 안전관리대행기관 위탁규모 제한(중소기업)	찬성 25.7%	찬성 36.3%
- 찬성시 제한규모	500인미만 43.6%, 300인미만 30.8%, 1000인미만 14.3%	300인미만 29.2%, 100인미만 20.5%, 500인미만 43.6%
③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제조업)	찬성 14.9%	찬성 8.1%
④ 안전관리자 선임의무 인원(최고4명)	찬성 34.4%	찬성 13.6%

4. 결론 및 추후과제

이상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행수수료는 장기적으로 자율화로 하고 단기적으로는 대행서비스의 질이 저해되지 않도록 물가상승을 등을 참고하여 인상하는 것이 필요할 판단되었다.

둘째, 대행서비스 수준향상과 합리적인 경쟁관계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행기관 수준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추후과제로는 자체선임 안전관리자제도 실태파악 등 안전관리대행을 포함한 안전관리자제도의 향후 개선방향 고찰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 [1] 한국산업안전학회, 안전관리자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01.12.
- [2] 지영근, 안전관리 대행제도에 관한 연구 : 산업안전분야, 서울산업대 석사논문, 1995.02.
- [3] 안만우,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연구 : 안전관리체제를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논문, 1993.02.
- [4] 고원곤, 한국 중소기업의 안전관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1992.02.
- [5] 김규식, 한국 산업안전제도 및 활동의 현황과 그 개선방안 : 정부, 공공기관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경희대 석사논문, 1991.02.
- [6] 노동부, 안전·보건관리대행및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관리규정(노동부예규 제436호), 1999.12.